

<b>제2024-20호</b> <b>2024년 2월 29일(목)</b>	<b>시</b>  <b>보</b> <b>여수시</b>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7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묘도 녹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
- 여수시 고시 제2024-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4-8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66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 공고 5
- 여수시 공고 제2024-68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24-687호 『광림동 장군산길 경관 개선사업』 입찰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4-723호 고병원성AI 전차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16
- 여수시 공고 제2024-725호 '23-'24년 가금농가에서 준수해야할 방역기준 공고 연장 26
- 여수시 공고 제2024-72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시설 청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5
- 여수시 공고 제2024-731호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8
- 여수시 공고 제2024-740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40
- 여수시 공고 제2024-741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알람(2024-13, 14) 42

회 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2. 2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묘도동 19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122, 소로 1-354)사업
  - 나. 명 칭 : 묘도 녹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64,117㎡
  - 나. 규 모 : L=965m, B=12m, L=480m, B=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7. 1. 19. ~ 2024. 2. 29.**  
**└ 변경: 2017. 1. 19. ~ 2026.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관계도서: 여수시 공영개발과, 도시계획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82) 및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4 - 79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 장소	허가면적 (㎡)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3-42 (23. 8. 2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117-3번지 일원 공유 수면	220	'24. 2. 29.	지방어항(성두항) 보수 보강사업

2024. 2. 29.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2. 29.

여 수 시 장 (인)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1) 공간시설 결정 변경 조서(변경)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3	여문공원	근린공원	문수동 169번지 일원	39,030	감)2,800	36,230	건고-448호 86.10.13	

■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여문공원	· 면적감소: A=39,030㎡ → 36,230㎡	·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예정부지 제척

- 2)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0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문수동 169	-	증)2,800	2,800	-	

■ 공공청사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	공공청사	신설(A=2,800㎡)	·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확장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1)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640-2	640-2	4,691.4	-	4,691.4	문수동 640-2	4,691.4	-	4,691.4	
386	386	843.8	-	843.8	여서동 386	843.8	-	843.8	
169	169	-	증)2,800	2,800	문수동 169	-	증)2,800	2,80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1)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변경)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40-2 (문수동)	640-2 (문수동)	공공 청사	지정용도	공공청사	공공청사
			권장용도	시청, 해양경비안전서, 주민센터, 파출소	시청, 해양경비안전서, 주민센터, 파출소
			불허용도	지정용도 및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	지정용도 및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4층 이하
111 161 (문수동)  222 381 386 (여서동)	111 161 (문수동)  222 381 386 (여서동)	공공 청사	지정용도	공공청사	공공청사
			권장용도	시청, 해양경비안전서, 주민센터, 파출소	시청, 해양경비안전서, 주민센터, 파출소
			불허용도	지정용도 및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	지정용도 및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5층 이하
-	169 (문수동)	공공 청사	지정용도	-	공공청사
			권장용도	-	주민자치센터
			불허용도	-	지정용도 및 부대시설 이외의 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3.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 게재 생략

4. 관계 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 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28.

여 수 시 장

1.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웅천지구단위계획구역	여수시 웅천동 일원	2,865,866	-	2,865,866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도로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98	12	국지도로	259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웅천 마리나항만	일반도로	-	여고-209호 '09.12.24.	항만시설 중복결정
변경	중로	3	98	12 ~ 14.5	국지도로	259	대로2-18 웅천동매립지	웅천 마리나항만	일반도로	-	-	항만시설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A	7.5	국지도로	85	중로1-82	중로3-98	일반도로	-	-	일방통행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98	중로 3-98	• 일부구간 폭원변경 - 12m → 14.5m	•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트레일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 변경
-	소로 3-A	• 신설 - L=85m, B=7.5m	•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트레일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4	노외 주차장	마리나주변 웅천동매립지	3,777	감)873	2,904	여고-209호 '09.12.24.	

-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4	노외 주차장	• 면적변경 - 당초 3,777m <sup>2</sup> → 변경 2,904m <sup>2</sup> 감)873m <sup>2</sup>	•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트레일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설되는 도로로 인한 주차장 면적 변경

※ 음회 변경 사항 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

■ 주차장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주차장17	-	3,777	-	3,777	
변경		-	2,904	-	2,904	

※ **금회 변경 사항 외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 조서 변경사항 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계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변경없음)-계재생략

2.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 : 계재 생략

3.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공고기간 : 2024. 2.28. ~ 2024. 3.13.(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9.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320, 공원: 227)

나. 명 칭: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6,713㎡

나. 규 모

구 분	결 정(㎡)	금회 시행(㎡)	비고
경관녹지 320	3,104	3,104	
어린이공원 227	3,609	3,60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김민곤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4.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7. 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불임

8. 공람기간: 2024. 2.29. ~ 2024. 3.14.(14일간)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경관녹지)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11필지			8,392	3,104						
1	하 양 동	산63-3	임	99	99	김감*	시전리 33*				
2		산67-3	임	1,785	822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3		산68-4	임	397	200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4		49-2	답	288	103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5		50-2	전	1,086	124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6		53-1	전	1,122	231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7		98-1	전	1,513	677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8		101-3	전	55	1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9		102-2	전	1,050	354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10		108-2	전	458	458	이의*	여수시 하멜로 64-*(종화동)				
11		924-10	구	539	35	국토교통부					

○ 토지조서(어린이공원)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2필지			35,546.8	3,609						
1	신기동	3	대	32,824.8	3,383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무*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3*(방림동)	근저당권	대지권 설정 580/580
푸*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4*(노대동)	근저당권		
정다*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두암동)	근저당권		
광*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유동)	근저당권		
진*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1-*(광무동)	근저당권		
동*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중흥동)	근저당권		
대*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동명동)	근저당권		
동광*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42*(산수동)	근저당권		
양*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2길 2*(양동)	근저당권		
예*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31-*(오치동)	근저당권		
신*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19번길 *(광천동)	근저당권		
순천*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2길 2*(장천동)	근저당권		
중*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29*(중흥동)	근저당권		
계*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6*(계림동)	근저당권		
온누*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204번길 *(양동)	근저당권		
동*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27*(동명동)	근저당권									
2		175	임	2,722	226	신기**지역 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 2층(신기동)				

# 『광림동 장군산길 경관 개선사업』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광림동 장군산길 경관 개선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 여 수 시 장

### I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광림동 장군산길 경관 개선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 ~ 4개월
3.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금액은 기초조사 및 분석, 디자인계획, 실시설계, 회의, 자문, 구조안전 진단, 공사, 부가세 등 시설 일체 완료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방법 : 제한입찰

(2)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4. 2.28.(수) ~ 2024. 3.2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홈페이지(www.yeosu.go.kr)</li> <li>· 조달청 나라장터(G2B) 공고</li> </ul>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2024. 3.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li> <li>· 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평가위원 추천</li> </ul>
제안서 평가	2024. 4.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자: 제안서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 분야)</li> <li>·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li> </ul>
협상적격자 통보	2024. 4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통보(개별통보)</li> </ul>
협상 진행	2024. 4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필요시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li> </ul>
계약 체결	2024. 4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li> </ul>

## II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사무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의 단독입찰만 가능함. (※ 공동수급 불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와 시각디자인 분야 모두 포함)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등록 및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 없음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Ⅲ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가. 접수일시 : 2024. 3. 21.(목) 10:00 ~ 17:00
  - 나. 접수장소 :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여수시 시청로 1, 본청 1층)
  -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를 참고하여 제출
  - 마.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및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http://www.yeosu.go.kr))에서 직접 내려받기
-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Ⅳ 평가위원 추천 및 제안서 평가

#### 1. 평가위원 추천

- 가. 일 시 : 2024. 3. 21.(목) 10:00 ~ 17:00(제안서 제출 시)
  - 나. 장 소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본청 1층)
  - 다. 추천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무작위 추천
- ※ 추천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2.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일 시 : 2024. 4. 1.(월) 14:00

나. 장 소 : 여수시청 국동입시별관 회의실(2층)/ 여수시 신월로 648

※ 사정에 따라 제안서 날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지

다. 제안설명 및 평가 방법 등 기타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1) 방 법 : 제안업체별 PPT·PDF 발표 후 평가

2)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서 평가일에 추첨하여 결정

3)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발 표 자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V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택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 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개별통보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평가 방법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VI**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로 같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 **VII**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VIII**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X** 기타사항

1.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3.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사업 공고에 따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7. 기타 문의사항 :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 061-659-4017)

## 고병원성AI 전차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9.

### 여 수 시 장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 (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 등(행정명령) 11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 061-659-4445)

**붙임 1**

**'23/'24년 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행정명령 (11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당초) '23.10.1.~ '24.2.29. → (조정) ~'24.3.31.	1천만원 이하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당초) '23.10.1.~ '24.2.29. → (조정) ~'24.3.3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
    -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간 : 2023. 10. 1. ~ 2024. 3. 31.(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3. 10. 1. ~ 2024. 3. 31.(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3~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3. 10. 1. ~ 2024. 3. 31.(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3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 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li> <li>-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li> </ul> <p>*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li> <li>-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li> <li>*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li>-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li> </ul>
4	<p>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p>	<p>○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li> <li>*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li>-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li> <li>*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li> <li>**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li> </ul>
5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li> <li>-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 하여야 함</li> <li>-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li> </ul> <p>*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p>
6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li> <li>-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 필증 발급 필요</li> </ul> <p>*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p> <p>**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p>
7	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li> <li>-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p> <p>-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p>
8	가금농장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p> <p>-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p> <p>-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p> <p>-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p> <p>○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p> <p>-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p> <p>-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p> <p>-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p>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에 당일 제출
9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p> <p>-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p> <p>*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p>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23. 10. 1. ~ 2024. 3. 31.(기존에 발령한 행정명령 기간 연장)
    -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3~'24년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할 방역기준 공고 연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9.

### 여 수 시 장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산(야생조류 발생 포함)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8건
6. 위반 시 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금농장에서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 의 처: 여수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 061-659-4445)

## 방역기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97호

###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 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 이상 1,000㎡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운영기간 : '23. 10. 1. ~ '24. 3. 31.(연장기간 '24. 3. 1. ~ '24. 3. 31.)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80호에 따른 방역기준 공고 기간 연장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4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역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시설

##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5]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24년 2월 28일 ~ 2024년 3월 22일(24일간)
2. 처분(예정)사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3. 공시송달 내용 : 청문실시 통지 ※붙임 내역참조
4. 문 의 처 : 여수시 여성가족과 061-659-3743

# 공시송달 내용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위반)						
당사자	성명(명칭)	여수성폭력상담소 운영자 강*희					
	주소	여수시 좌수영로 ***-**, ***동 ***호(**동,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상담원 등이 자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제22조 제2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담소 업무의 폐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23조(인가의 취소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5(행정처분의 기준)						
청문실시	제출처	기관명	여수시청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	최진아
		주소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전화번호	061)659-3743
		일시	2024. 3. 26.(화) 14:00			장소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민원실 옆)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장		
		성명			채주은		

### <청문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시 송 달 공 고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된 토지의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징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제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상속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될 예정임을 상속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고대상: 1명
- 나. 공고기간: 2024. 2. 29. ~ 2024. 3. 14.(15일간)
- 다. 공고장소: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라. 기타사항: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474)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2. 29.

여 수 시 장(인)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조서**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조서				
소호지구				
연번	토지소유자	주 소	발송구분	배송결과
1	차*자	전라남도 광양시 길호길 1*** (중동)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조정금 부과 예정 알림	반송배달(폐문부재)

###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9.

## 여 수 시 장

###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서귀포시장 (해양수산과)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산22-3번지 일원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1,156㎡	허가일로부터 6개월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pdean@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해수8급 박정호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491	2024-13	패류양식 (비탁식)	7	화정 여자	2014.03.15. -2024.03.14 (10년)	2024.03.15.- 2034.03.14 (10년)	210	여수시 소리면	강** 외 1	
11542	2024-14	패류양식 (비탁식)	7.5	화정 여자	2024.06.01. -2024.05.31 (10년)	2024.06.01.- 2034.05.31. (10년)	225	여수시 소리면	강**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4. 2. 29.

여 수 시 장